

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

국토교통부

국 토 교 통 부

수신 정규창 귀하 (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, 서울에너지공사 신사업본부 (목동))

(경유)

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(태양에너지설비)

1.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,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가. 질의요지

-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(주차장)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관련

나. 회신내용

- 1)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[별표1] 제2호자목을 보면, 전기공급설비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전기공급설비(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, 태양에너지 설비, 풍력 설비, 지열에너지 설비 및 바이오 에너지 설비 포함)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, 연료전지 설비,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지열에너지 설비를 건축물(건축물의 대지 포함) 또는 공작물이나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2) 또한, 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」 [별표2] 제2호아목1)나)를 보면 전기공급시설로서 태양에너지 설비시설을 기존 건축물 상부나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(임상이 양호한 곳은 제외) 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,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(영 별표1제2호 관련)로서 동 항목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형질변경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3)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(주차장)에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관련해서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허가에 관한 사항은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고 관련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2. 다시 한 번 국토교통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,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(☎ 044-201-3750, 담당 강명준)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주무관 강명준 시설사무관 전결 2017. 12. 15.
최은영

협조자

시행 녹색도시과-6932 (2017. 12. 15.)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3750 팩스번호 044-201-5574 / kangmj21@molit.go.kr / 비공개(6)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